

주식회사 씨티케이 (엘레먼트 머티리얼즈 테크놀로지 그룹 회사)

구매약관(대한민국)

1. 일반조항

- a. 본 약관(이하 “약관”)에서는 아래와 같은 정의를 사용합니다.
- 구매업체:**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엘레먼트 머티리얼즈 테크놀로지(Element Materials Technology) 그룹 법인
 - 공급업체:** 주문서에 명시된 공급업체를 의미합니다. “상품”은 주문서에 명시된 상품 또는 기타 자재, 그 외 모든 필요한 부수적 상품 또는 자재
 - 서비스:** 주문서에 명시된 서비스 및 모든 필요한 부수적 서비스
 - 회사:** 구매업체 또는 그 구매업체의 모든 자회사
 - 계약:**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해 구매업체와 공급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본 약관 및 주문서 포함)
 - 주문서:** 공급업체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매업체의 주문
 - 공급업체 보증서:** 5a, 5b, 5c 항에서 설명하는 관련 보증
- b. 주문서는 본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구매업체의 제안을 뜻합니다. 주문은 다음 중 조기에 도래하는 시점에서 수락된 것으로 합니다.
- i. 공급업체가 주문에 대하여 서면 수락 문서를 작성한 시점 혹은
 - ii. 주문 달성에 일치하는 공급업체의 행위가 있는 시점.
- 해당 시점 및 일자부터 계약이 성립됩니다.
- c. 본 약관 및 주문서는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모든 조항을 포함하며, 이전에 당사자 쌍방간에 이루어진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 진술, 제안 문서 또는 양해(브로셔, 가격 목록, 주문확인서 또는 유사한 문서에 따라 공급업체가 주장하는 모든 약관 포함)을 대체합니다. 본 약관은 공급업체가 적용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또는 교역, 관습, 관행, 거래 과정상 암시되는 모든 기타 조건을 배제합니다. 주문서 또는 본 약관에 대한 모든 변경은 구매업체의 명시적 서면 합의 없이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구매업체의 법적 권리 및 기타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d. 본 약관 내 제목은 오로지 편의를 위한 것으로 그 해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포함”이라는 단어는 앞서 등장한 문구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거나 제시되는 모든 예시가 해당 사안에 대한 배타적 또는 제한적 예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 상품의 인도/서비스의 제공

- a. 공급업체는 주문서에 명시된 완료일까지 상품 인도 및 서비스 제공을 완료합니다. 일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완료는 주문서 일자로부터 28 일 이내 또는 구매업체와 공급업체가 서면으로 합의한 이후 일자로 합니다. 상품의 인도 및 서비스의 완료 시점은 계약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 b. 구매업체를 대상으로하는 상품의 인도 및 서비스의 제공은 주문서에 명시된 장소(또는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주문서를 발송한 구매업체 부지)에서 주문서에 명시된 방법(또는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업계에서 통용되는 모범적 관행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c. 공급업체는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만큼의 상품을 인도합니다. 구매업체는 재량에 따라 수량 변동을 수락하고 실제 인도된 수량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d.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이동 시 상품을 적절히 포장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포장용기 및 기타 포장재는 공급가에 포함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e. 공급업체는 상품의 공급 및 인도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수출입 면허, 허가 또는 동의(취업 허가 또는 동의 포함)를 자비로 획득하고 준수합니다.
- f. 구매업체 또는 그 대표자는 상품을 검사 및 시험하고 서비스 제공을 검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이러한 목적으로 자사 부지에 출입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구매업체가 이러한 검사 또는 시험을 수행한 결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가 계약상의 기준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공급업체에 통지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계약상의 기준과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구매업체에 의한 검사 또는 시험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구매업체의 승낙이나 수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g. 구매업체는 상품의 사양 또는 서비스의 수행 방법, 수량, 포장, 상품 인도/서비스 수행의 시점 또는 장소의 변경을 포함하여 주문서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서면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상품 인도 및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상품 인도/서비스 수행을 위한 가격 및 일정이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정에 따른 공급업체의 모든 청구는 공급업체가 그러한 변경을 진행하기에 앞서 구매업체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h. 구매업체는 상품의 인도 또는 서비스의 수행 이전에 언제든지 공급업체에 통지하여 주문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업체의 유일한 책임은 취소 시점에 진행 중이던 작업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며 이러한 보상에는 어떠한 예상 수익 또는 결과적 손실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격 및 대금 지급

- a. 주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관세, 수수료 또는 세금, 인도 비용, 운송 비용, 포장 비용 및 공급업체에 대한 지급금을 포함하며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조정될 수 없습니다.
- b. 주문서에 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격에 대한 구매업체와의 서면 합의가 공급업체의 주문 이행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c. 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에 주문서 번호, 부가가치세율, 부가가치세 부과 금액, 공급업체의 부가가치세 등록번호가 표시된 경우에만 구매업체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매업체의 대금 지급 기일은 구매업체가 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세금계산서 일자로부터 60 일입니다.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완료하기 전에 구매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 d. 구매업체의 대금 지급은 공급업체에 대한 구매업체의 모든 클레임 및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급업체가 계약 의무를 충족하였음을 구매업체가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와의 분쟁 또는 클레임 발생 시 구매업체는 계약 상의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급업체가 회사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구매업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업체에 지불할 대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각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공급업체의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구매업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기타 구제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4. 위험 및 권원

- a. 상품에 대한 위험 및 권원은 해당 상품이 구매업체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또는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체의 운송업체가 상품을 수령하는 시점에) 구매업체에게 이전됩니다. 단, 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품이 구매업체에 이전되는 경우, 해당 상품이 구매업체 부지 또는 자산에 상당한 수준으로 설치 또는 통합이 이루어진 시점 또는 서비스가 완료되는 시점 중 이른 시점에 위험 및 권원이 구매업체로 이전됩니다.
- b. 구매업체가 계약에 따라 구매업체에 공급될 상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를 공급업체에 무상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자재 및 장비는 항상 구매업체의 소유이나 공급업체가 수령하는 시점부터 공급업체의 책임이 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자재 및 장비를 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조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러한 자재 및 장비가 어떠한 청구, 유치권 또는 채무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이러한 자재 및 장비를 구매업체의 자산으로 명확히 분리 및 식별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제공한 모든 자재, 장비, 도구, 도면, 명세서, 데이터(이하 “구매업체 자재”)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보관하고, 구매업체 자재를 구매업체에 반환할 때까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며, 구매업체의 서면 지시 또는 승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업체 자재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 d.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제공된 모든 품목에 대한 권원은 항상 구매업체에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품목과 관련하여 어떠한 성격의 유치권도 행사하거나, 주장하거나, 행사 또는 주장을 의도하지 않으며 해당 품목의 위험은 서비스가 완료되어 구매업체에 재인도되는 시점까지 공급업체에 있습니다. 재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위험은 구매업체에 귀속됩니다.

5. 보증 및 책임

- a. 상품의 경우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 i. 인도 시점의 상품은 구매업체가 공급업체에 제공한 모든 명세서 및 도면과 일치하며, 명세서 또는 도면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의 표준 명세서 및 모든 설명 또는 견본과 일치합니다.
 - ii. 상품은 품질, 디자인, 자재 및 완성도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수준이고 공급업체가 의도하거나 구매업체가 명시하거나 계약 또는 당사자 쌍방간의 거래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목적에 부합하며, 공급업체는 상품의 공급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구매업체의 모든 품목 및 기타 자재(해당하는 경우)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해당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최고 수준의 주의 및 기술로 취급합니다.
 - iii. 상품은 해당 상품의 제조, 포장, 라벨 부착, 보관, 취급 및 인도와 관련된 모든 준거 법률, 표준 및 규정(및 주문서에 명시된 모든 컬렉션, 수량 또는 기타 요건), 모든 보건, 안전 및 환경 규제 및 업계에서 통용되는 표준을 준수합니다.
- b. 서비스의 경우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에 다음을 보증합니다.
 - i. 구매업체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서비스가 합의된 명세서와 일치하고, 명세서가 없는 경우 공급업체의 표준 명세서 및 모든 설명 또는 시연과 일치하며 그 외에 해당 업계에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 중 최고 수준이자 구매업체가 합리적으로 만족하는 서비스여야 합니다.
 - ii. 서비스는 해당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최고의 주의, 기술, 완성도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공급업체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구매업체의 모든 품목 및 기타 자재(해당하는 경우)를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관하고 해당 업계에서 받아들여지는 최고 수준의 주의 및 기술로 취급합니다.
 - iii.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고, 본 계약에 따라 공급업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를 배치합니다.
 - iv. 최고 품질의 상품, 자재, 표준 및 기법을 사용하고, 서비스에 공급 및 사용되었거나 구매업체로 이전된 산출물과 모든 상품 및 자재에 완성도, 설치 및 디자인 불량 없이 보장을 제공합니다.
 - v. 적용 가능한 모든 표준, 규정, 법적 요건 그리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vi. 구매업체의 부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공급업체는 때때로 그리고 구매업체의 기타 합리적 요청에 따라 관련된 모든 구매업체 정책(보건 및 안전 정책과 물리, 시스템 및 정보보안 정책 포함) 및 시행 중인 구매업체의 현장 규제를 준수합니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사업 수행 목적으로 의존하는 모든 면허, 인가, 동의 또는 허가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수행 또는 생략하지 아니할 것임을 보증하며,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서비스에 의존하거나 이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인식합니다.
- d. 상품 및 서비스가 공급업체의 보증을 일부라도 준수하지 않는다고(위반사항이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구매업체가 판단하는 경우,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 통지를 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 i. 모든 상품 또는 그 일부(미준수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은 모든 상품 전체 또는 그 일부 포함)를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모든 대금에 대하여 즉시 환불을 요구하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업체가 상품을 재판매하거나 달리 처리한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는 여전히 구매업체에게 부여됩니다.
 - ii. 모든 상품의 추가 인도 또는 서비스의 추가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른 계약 포함).
 - iii. 공급업체에게 (무상으로) 상품을 보상 또는 대체하거나 구매업체가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재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두 경우 모두 30 일 이내). 공급업체가 준수에 실패하거나 보상, 수리, 대체 또는 재이행이 불만족스러운 경우 구매업체는 보상, 수리, 대체 또는 재이행을 요구한 후에도 상품 및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체 상품 또는 재이행된 서비스는 모든 측면에서 공급업체의 보증을 준수해야 합니다.
 - iv. (자체적으로 또는 제 3자 주선을 통하여) 공급업체의 비용 부담으로 상품을 보상, 수정, 수리 또는 다른 방식으로 교정하거나 서비스를 재이행합니다. 구매업체의 요청시 공급업체는 이러한 보상, 변경, 수리, 교정 또는 재이행 비용 및 경비를 구매업체에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 e. 공급업체의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상품은 공급업체가 검사할 수 있도록 구매업체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보존하며 (단, 공급업체는 구매업체로부터 불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해당 상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야 함), 반환이 가능한 상태인 경우 공급업체의 비용 부담 아래 공급업체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 f. 공급업체는 공급업체(또는 그 하도급업체)의 서비스 제공 또는 상품 공급의 미이행 또는 기타 부주의로 인한 구매업체, 구매업체의 직원, 구매업체의 자산 및 기타 제 3자에 대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구매업체가 입을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손실 또는 손해를 보전하기에 적절한 금액(또는 주문서에 명시된 기타 관련 금액)으로 평판이 좋은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요청 시 이러한 보장의 증거를 구매업체에 제공합니다.

6. 불가항력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모든 상황(천재지변, 홍수, 가뭄, 지진 또는 기타 자연재해, 전염병, 유행병, 전쟁, 법률, 정부 또는 공공당국의 조치, 전쟁, 화재, 공장 또는 기계 고장, 연료 또는 전력 불가용, 폭발, 국가 비상사태 포함)으로 인하여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사업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구매업체는 인도 또는 대금 지급 일자를 연기하거나 주문을 취소하거나 계약 내용을 변경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7. 지적재산권 및 제 3 자 클레임

- a. 계약의 목적으로 구매업체가 준비한 모든 디자인, 도면, 인쇄물, 견본, 명세서 및 기타 자재, 그리고 계약의 목적으로 공급업체가 준비한 구매업체의 독점적 디자인 또는 기타 지적재산(특허, 발명, 노하우, 영업비밀, 의장등록,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권, 상표, 서비스표, 로고, 도메인명, 업체명, 상호 및 의장권 포함)을 대표, 포함 또는 상징하는 그러한 모든 품목, 그리고 구매업체의 의뢰 또는 명세서에 따라 공급업체가 준비한 모든 관련 품목은 (경우에 따라) 구매업체의 자산으로 남겨나 구매업체의 자산이 되며, 계약의 완료 또는 종료 시점에 구매업체에 반환됩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요청에 따라 구매업체의 완전한 권리, 권원 및 이해관계 행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문서, 승인 또는 선언을 구매업체의 비용 부담 없이 수행하거나 그러한 수행을 확보(경우에 따라) 할 것을 약속합니다.
- b. 공급업체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적용 또는 사용하도록 구매업체로부터 요청받은 모든 상표 또는 상표명을 구매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이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지적재산권을 무효화하거나 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행위를 하거나 제 3 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승인하면 안 됩니다. 또한, 부작위로 인해 그러한 효과가 초래될 수 있는 필요 행위를 하지 않거나 제 3 자가 그러한 행위를 부작위하도록 승인하면 안 됩니다.

8. 기밀유지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와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가 공급업체에 공개한 기밀의 성격을 띠는 정보 구매업체의 사업, 업무, 자산,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노하우, 명세서, 발명, 프로세스, 이니셔티브, 정보 및 공급업체가 취득할 수 있는 구매업체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계된 모든 기타 기밀정보(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7 조 (a)항에 언급된 모든 해당 정보 포함)를 엄격한 기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자사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에 이러한 기밀정보를 공개할 시 계약 상 공급업체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이러한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가 공급업체를 구속하는 기밀유지 의무에 상응하는 기밀유지 의무를 지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본 8 조는 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효력을 유지합니다.

9. 정보의 보호

본 9 조에서 (i) **정보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시행 중인 정보보호 관련 준거법을 의미하며, (ii) **처리/처리중/처리된, 정보관리 담당자, 정보처리 담당자, 정보주체, 개인정보, 개인정보 위반**은 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 a. 공급업체는 업체 담당자 정보(예: 업체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함 또는 직원 ID) 이외의 개인정보를 구매업체에 제공하거나 달리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 않는 데 합의합니다. 단, 서비스의 제공에 달리 필요한 경우 공급업체는 이러한 추가 개인정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구매업체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b. 계약 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항상 정보보호법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 관련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어떠한 수준이든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i)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구매업체의 문서화된 지시(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시를 뜻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처리, 이전, 조정, 수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 3 자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그러한 공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법적 요건에 따라 그러할 경우 공급업체는 처리에 앞서 해당 법적 요건을 구매업체에게 고지해야 하며,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공익을 이유로 이러한 고지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ii) 이러한 개인정보의 무단 또는 불법 처리, 우발적 손실, 파괴 또는 손상을 막고 최소한 정보보호 준거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절한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이행하고 유지합니다. (iii)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든 적절한 정보이전 합의 없이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하지 않습니다. (iv)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을 수 있는 직원이 적절한 기밀유지 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v)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도급업체의 개인정보 처리(이하 “**하위 처리 담당자**”)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vi) 본 계약의 종료 또는 만료 시 90 일 안에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그보다 이른 경우 관계된 서비스를 중단한 후 최대한 빨리(구매업체의 의향에 따라) 개인정보 및 그에 포함된 정보 및 모든 사본을 반환하거나 안전하게 시스템에서 제거합니다. 단, 공급업체가 법적 또는 규제 요건으로 인하여 유지하여야 하는 수준의 개인정보는 제외합니다.
- c. 구매업체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보호 준거법에 따른 권리 행사 요청을 받은 경우, 공급업체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구매업체에게 이를 통지하고 구매업체가 적시에 정보주체의 접근권 요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실행 및 유지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지원을 제공합니다.
- d. 공급업체는 개인정보 위반 또는 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구매업체에 신속하고 지체 없이(어떠한 경우라도 인지 시점으로부터 24 시간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구매업체가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위반 보고 의무를 충족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충분한 정보를 구매업체에 제공하고 구매업체에서 지시한 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조사, 완화, 구제조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 e.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이러한 추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 구매업체 또는 구매업체의 지시를 받은 감사가 수행하는 모든 감사 또는 검토 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기여하여 공급업체가 본 9 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한다는 확약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 언제나 이러한 요건은 공급업체가 (i) 공급업체의 내부 가격정책 또는 (ii) 공급업체의 기타 고객사와 관계된 정보(정보보호 당국이 지시 또는 요구한 경우 제외)를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공급업체는 본 계약에 따라 구매업체가 제공한 지시가 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매업체에 반드시 이를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 f. 본 계약 상의 처리 주체 및 목적은 본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처리는 9 조 (b)항 (vi)호에 따라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처리의 성격은 공급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처리 업무로, 이는 본 계약서에 자세히 기술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리는 구매업체의 고객 및 직원(해당하는 경우)과 관계된 것으로, 성명과 연락처, 신원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보관리 담당자로서 구매업체가 가지는 의무와 권리는 본 계약 9 조 및 기타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매업체는 정보보호 준거법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생각되는 경우 때때로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9 조 (f)항을 합리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10. 부패방지

- a. 공급업체는 대한민국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OECD 뇌물방지협약, 영국의 2010년 뇌물수수법, 미국의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이하 “반부패법”)을 포함한 모든 뇌물방지 및 반부패 관련 준거 법률, 법령, 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반부패법에 대한 구매업체의 위반을 초래하는 행위의 수행 또는 생략을 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공급업체는 구매업체가 고지하고 수시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구매업체의 반부패 정책을 준수합니다.
 - b. 공급업체는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구매업체가 받는 모든 유형의 부당한 금전적 또는 기타 이득에 대한 요청 또는 요구를 구매업체에 즉시 보고합니다.
- 11. 현대판 노예제**
- a. 공급업체는 계약 의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5년 현대노예법을 포함하여 노예제 및 인신매매의 방지와 관련된 모든 준거 법률, 법령, 규제, 규정을 준수하고 각 하도급업체도 이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b. 공급업체는 자사의 공급업체, 하도급업체, 공급망 내 기타 참여자에 대한 실사 절차를 실행하여 자사 공급망 내에서 노예제 또는 인신매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c. 공급업체는 자사 공급망 내에서 실제 노예제나 인신매매, 또는 노예제나 인신매매로 의심되는 행위를 인지하는 즉시 구매업체에 이를 통지합니다.
- 12. 면책조항**
- 공급업체는 다음의 결과로 또는 다음과 관련하여 구매업체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모든 손실, 절차, 책임, 클레임, 비용 및 경비(완전면책 기준의 법률비용 포함)로부터 구매업체를 면책합니다.
- i. 공급업체의 모든 보증을 준수하지 못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 ii. 불량이거나 준거법 또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상품 및 서비스
 - iii. 공급업체의 상품 인도/서비스 수행의 지연 또는 불완전 이행
 - iv. 공급업체의 기타 계약 위반, 또는 공급업체, 그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의 모든 과실행위(사망 또는 개인상해 초래 또는 기여 여부와 무관)
 - v. 상품 및 서비스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된 것으로, 구매업체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초래한 책임,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에 대하여 고객 또는 제 3자가 구매업체에 제기한 모든 청구
 - vi. 제 3자 또는 구매업체의 특허, 의장등록, 저작권, 의장권, 상표, 서비스표, 상표명 및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한 공급업체의 모든 침해 또는 그로 의심되는 정황
- 13. 계약의 종료 및 중지**
- A. 다음의 경우 구매업체는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계약을 즉시 종료하거나 주문 전체 또는 잔여 부분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i. 공급업체가 2조 (a)항에서 요구하는 일자 또는 기간 내(경우에 따라)에 상품을 인도 또는 발송하거나 서비스를 개시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의 기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 ii. 공급업체가 지급기한이 도래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사업 운영을 중단(또는 중단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채권자와 어떠한 협의 또는 구성을 체결하거나, 파산행위를 실행하거나, 해산을 위한 명령 또는 유효한 결의안 통과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거나, 또는 파산관리인, 파산관재인이 임명되거나 상기 내용에 상응하는 해외 상황을 겪는 경우
 - iii. 13조 (a)항 (ii)호의 사건이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또는 공급업체가 계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으로 구매업체가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 b. 13조 (a)항에 명시된 상황에서, 구매업체는 계약을 위하여 준비 중인 모든 상품을 해당 상품의 생산이 이루어지던 부지에서 반출시키고 해당 상품을 다른 장소에서 완성하거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업체에 그리고 공급업체를 위해 제공된 모든 자재를 해당 자재가 서비스에 따라 처리되거나 달리 취급되던 부지에서 반출시킬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업체는 타 업체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구매업체에 발생한 비용을 공급업체에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제공된 모든 서비스, 반출된 상품/자재, 구매업체가 인수한 재공품의 대가를 적정한 비율로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 14. 기타 사항**
- a. 본 계약에 따른 구매업체의 모든 권리 또는 구제조치는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구매업체의 기타 권리 또는 구제조치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b.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쌍방간의 제휴를 형성 또는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c. 공급업체는 구매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 하의 권리 또는 의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임, 이전, 하도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d. 관할당국에서 (전체 또는 일부가) 무효, 원천무효, 실행 불가능 또는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본 약관의 모든 조항은 이러한 무효, 원천무효, 실행 불가능 또는 불합리의 정도만큼 분리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며, 본 약관의 기타 조항과 해당 조항의 나머지 부분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e.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구매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주소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편, 1등 우편,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편으로 전달하는 경우, 전달 일자 이후 첫 번째 영업일에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는 경우, 1등 우편으로 선불 발송한 일자 이후 세 번째 영업일에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전달하는 경우, 전송 시점에 통지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f. 구매업체의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에 대한 그 어떤 미실행 또는 지연도 그에 대한 권리 포기로 작동하지 않으며, 모든 부분적 실행도 동일한 또는 일부 기타 권리, 권한 또는 구제조치의 추가 실행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 조항에서 부여된 구매업체를 위한 구제조치도 기타 구제조치를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모든 구제조치는 기타 모든 구제조치에 더하여 누적됩니다.
 - g. 본 약관 중 계약 종료 이후에도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조항은 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7조, 8조, 10조, 13조 (b)항 포함).
 - h.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 조건 중 어느 것도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되도록 의도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계약에 따른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습니다.
 - i.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공급업체는 제 1심 재판을 관할하는 상호 합의된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